



특허등록원부

특 허 번 호	제 1205520 호
---------	-------------

[권 리 란]

표시번호	등 록 사 항				
1번	출원연월일	2012년 03월 07일	출원번호	2012-0023132	
	우선권	주장일자	2011년 10월 11일	주장수	1
		주장국	대한민국		
	공고연월일	2012년 11월 27일	공고번호	-	
	특허결정(심결)연월일	2012년 11월 01일	청구범위의 항수	18	
	분류기호	E06B 9/322			
	발명의 명칭	분리 조절형 블라인드 장치			
	존속기간(예정)만료일	2032년 03월 07일			
2012년 11월 21일 등록					

[특 허 료 란]

제 01 - 03 년분 (2012.11.21 ~ 2015.11.21)	금 액	224,100 원(소기업)	2012년 11월 22일	납입
제 04 - 04 년분 (2015.11.22 ~ 2016.11.21)	금 액	436,000 원	2015년 11월 23일	납입
반환사유: 소기업(2016-0699599, 2016.11.15), 반환금액 : 130,800원			2016년 12월 13일	반환
제 05 - 05 년분 (2016.11.22 ~ 2017.11.21)	금 액	305,200 원(소기업)	2016년 11월 15일	납입

[특 허 권 자 란]

(최종권리자) (주)블라인드팩토리 (110111-*****) 경기도 광주시 광남안로129번길 15 (목동)	
순위번호	등 록 사 항
1번 (등록권리자)	(주)블라인드팩토리(110111-*****) 경기도 광주시 광남안로129번길 15 (목동) 2012년 11월 21일 등록
1번 부기1	(도로명주소경정등록) 관 리 번 호 : 2014-0024631 등록원인일자 : 2014년 01월 01일 등 록 원 인 : 도로명주소법제20조에 의한 지번 주소의 도로명 주소 변경 등 록 내 용 : 도로명주소법제20조에 의거, 순위번호1번의 권리자 (주)블라인드팩토리의 주소를 직권경정한. 변 경 사 항 변경전 :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133 변경후 : 경기 하남시 감이로39번길 31, (감이동) 주 소 증 명 : 변경후 주소는 주소체계(지번주소 → 도로명주소) 전환에 따라 변경전 주소를 직권경정한 동일한 주소임 2014년 03월 01일 등록
1번 부기2	(등록권리자의 표시통합관리) 접수 연월일 : 2014년 12월 22일 접 수 번 호 : 2014-5156746 변경 권리자 : (주)블라인드팩토리(110111-*****) 경기도 광주시 광남안로129번길 15 (목동) 변 경 사 항 변경전 : 경기 하남시 감이로39번길 31, (감이동) 변경후 : 경기도 광주시 광남안로129번길 15 (목동) 2014년 12월 22일 등록
2번	(보전처분등록) 접수 연월일 : 2013년 03월 25일 접 수 번 호 : 2013-0159119

	사건의 표시 : 수원지방법원 2013회합 24 회생 등록 권리자 : 주식회사 블라인드팩토리 하남시 감이동 133 등록원인일자 : 2013년 03월 15일 등록의 목적 : 별지 기재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, 담보권·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기입등록	등록원인 : 재산보전처분결정.	2013년 03월 25일 등록
3번	(보전처분의 말소등록) 접수 연월일 : 2015년 11월 12일 사건의 표시 : 수원지방법원 2013회합 24 회생 등록 권리자 : 주식회사 블라인드팩토리(110111-*****) 경기도 광주시 광남안로129번길 15 (목동) 등록원인일자 : 2015년 11월 10일 등록의 목적 : 별지 기재 특허권 등에 대하여 한 보전처분 등록의 말소 주 말 번호 : 2	접수 번호 : 2015-0660952 등록원인 : 회생절차 종결결정	2015년 11월 12일 등록

[전용 실시권 자란]

순위번호	등 록 사 항
1번	(전용실시권의 설정등록) 접수 연월일 : 2017년 10월 27일 등록 의무자 : (주)블라인드팩토리(110111-*****) 경기도 광주시 광남안로129번길 15 (목동) 전용실시권자 : 주식회사 이비엘리더(110111-*****)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88 , 6층(도봉동, 엘로이빌딩) 등록원인 : 설정계약 전용실시권의 범위 기간 : 2017년 10월 27일부터 2018년 10월 26일까지 지역 : 대한민국 실시내용 : 사용

2017년 10월 27일 등록

이 등본(초본)은 등록원부와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.
(제 000231641 호)

2017년 11월 01일

특 허 청



◆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, 특허청 홈페이지(www.kipo.go.kr)의 '특허넷-온라인제 증명발급' 메뉴를 통해 발급번호 또는 문서하단의 바코드로 내용의 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. 단, 발급번호를 통한 확인은 90일까지 가능합니다.